

\*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연도	2024.01.01 ~ 2024.12.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	주식회사 케이비아이오컴퍼니 220-81-45629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분	①요건	②검토내용	③적합여부	④적정여부															
사업요건	<p>①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        ③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</p> <p>※ ②, ③은 2025.0.0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</p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 업태별</th><th>기준경비율코드</th><th>사업수입금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01) ( 도매 및 소매업 )업</td><td>(04) 514919</td><td>(07) 27,396,552,102</td></tr> <tr> <td>(02) ( )업</td><td>(05)</td><td>(08)</td></tr> <tr> <td>(03) 그밖의 사업</td><td>(06)</td><td>(09)</td></tr> <tr> <td>계</td><td></td><td>27,396,552,102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 업태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(01) ( 도매 및 소매업 )업	(04) 514919	(07) 27,396,552,102	(02) ( )업	(05)	(08)	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계		27,396,552,102	(17) (Y)	(26) (N)
구분 업태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																
(01) ( 도매 및 소매업 )업	(04) 514919	(07) 27,396,552,102																	
(02) ( )업	(05)	(08)																	
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
계		27,396,552,102																	
중기업	<p>⑪ 아래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</p> <p>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( "평균 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</p> <p>② 총업제도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</p>	<p>가. 매출액</p> <p>- 당 회사 (10) ( 273.9 억원 )</p> <p>- 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(11) ( 1,000 억원 ) 이하</p> <p>나. 자산총액(12) ( 612.0 억원 )</p>	(18) (Y)	(N)															
독립성요건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</li> <li>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아닐 것</li> <li>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신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( ⑪의① 기준 ) 이내일 것</li> </ul>	(19) (Y)	(N)															
유예기간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<p>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⑪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「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」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</p> <p>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</p> <p>○ 사유발생 연도(13) ( 년 )</p>	(20) (Y)	(N)															
소기업	⑯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 ⑪ 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 ⑬ 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(N)	(27) (N)															
기업	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( 「평균매출액등」은 '매출액'으로 본다) 이내일 것	<p>○ 매출액</p> <p>- 당 회사 (14) ( 273.9 억원 )</p> <p>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(15) ( 50.0 억원 ) 이하</p>	(22) (N)	(N)															

구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		
	⑯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 ⑯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(Y) (N)	(28)								
중 견 기 업	⑰ 소유의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</li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</li> </ul>	(24) (Y) (N)	적 (Y)								
	⑱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 구 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 2020. 12. 29. 법률 제 177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]: 1천5백억원 미만(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</li> <li>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기록2): 5천억원 미만</li> <li>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</li> </ul>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직전 3년</th> <th>직전 2년</th> <th>직전 1년</th> <th>평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억원</td> <td>억원</td> <td>억원</td> <td>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억원	억원	억원	억원	(25) (Y) (N)	부 (N)
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							
억원	억원	억원	억원									

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6, 5층(잠원동, 우진빌딩)

이 정 회 계 법 인  
대표이사 김 선 엽

